|  |  |  |
| --- | --- | --- |
| **기업이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유관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과기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및 과기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하도록 보다 더 장려하고,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합작을 개방하기 위해 기업이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하 ‘연구개발비용’)의 기업소득세 세전 추가공제 유관정책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의 실제발생액 80%를 기준으로 위탁자가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경내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용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상술한 비용의 실제발생액은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출명세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경외에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위탁자는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에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은 기술계약 인정등기관리방법 및 기술계약인정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3. 기업이 연도신고 시 우대혜택을 향유해야 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개정 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3호)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처리하고, 아래의 자료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3.1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프로젝트계획서와 기업내 권한 보유부문이 입항한 결의문건  3.2 위탁한 연구개발전문기구 또는 프로젝트 팀의 편성 현황과 연구개발인원 명단  3.3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의 등기를 거친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계약서  3.4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및 집계표  3.5 경외 연구개발 위탁과 관련한 은행의 지급 증빙과 수탁자가 발급한 입금 증빙  3.6 당해연도에 위탁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등 자료  기업이 만약 지시(地市)급(포함) 이상의 과학기술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감정의견을 이미 취득한 경우, 자료로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4. 기업은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및 비치∙보존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5.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의 기타 정책조건과 관리요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비율 제고에 관한 통지>(재세[2017]34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97호) 등 문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본 통지에서 일컫는 경외에 위탁해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에는 경외 개인에게 위탁해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7. 본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세[2015]119호 문건 제2조 중 “기업이 경외기구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공제 할 수 없다”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  2018년 6월 25일 |  | **关于企业委托境外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8〕6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科技厅（局），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科技局：  　　为进一步激励企业加大研发投入，加强创新能力开放合作，现就企业委托境外进行研发活动发生的研究开发费用（以下简称研发费用）企业所得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问题通知如下：  　　一、委托境外进行研发活动所发生的费用，按照费用实际发生额的80%计入委托方的委托境外研发费用。委托境外研发费用不超过境内符合条件的研发费用三分之二的部分，可以按规定在企业所得税前加计扣除。  　　上述费用实际发生额应按照独立交易原则确定。委托方与受托方存在关联关系的，受托方应向委托方提供研发项目费用支出明细情况。  　　二、委托境外进行研发活动应签订技术开发合同，并由委托方到科技行政主管部门进行登记。相关事项按技术合同认定登记管理办法及技术合同认定规则执行。  　　三、企业应在年度申报享受优惠时，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3号）的规定办理有关手续，并留存备查以下资料：  　　（一）企业委托研发项目计划书和企业有权部门立项的决议文件；  　　（二）委托研究开发专门机构或项目组的编制情况和研发人员名单；  　　（三）经科技行政主管部门登记的委托境外研发合同；  　　（四）“研发支出”辅助账及汇总表；  　　（五）委托境外研发银行支付凭证和受托方开具的收款凭据；  　　（六）当年委托研发项目的进展情况等资料。  　　企业如果已取得地市级（含）以上科技行政主管部门出具的鉴定意见，应作为资料留存备查。  　　四、企业对委托境外研发费用以及留存备查资料的真实性、合法性承担法律责任。  　　五、委托境外研发费用加计扣除其他政策口径和管理要求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5〕119号）、《财政部 税务总局 科技部关于提高科技型中小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比例的通知》（财税〔2017〕34号）、《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7号）等文件规定执行。  　　六、本通知所称委托境外进行研发活动不包括委托境外个人进行的研发活动。  　　七、本通知自2018年1月1日起执行。财税〔2015〕119号文件第二条中“企业委托境外机构或个人进行研发活动所发生的费用，不得加计扣除”的规定同时废止。  财政部  税务总局  科技部  2018年6月25日 |